

#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 김종민 前 순천지청장



### 법조인의 힘

#### “조국 사태 이후 수사지휘권 남발... 형사사법시스템 고장났다”



“검사와 경찰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쉽게 검찰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논의에 쉽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변호사는 31일 발행한 저서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연구한 검찰 제도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1. 대륙법계 국가에서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 받아

김 변호사는 2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으로 꼽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등을 역임했다. 2007~2008년 프랑스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는 등 유럽 검찰제도도 깊이 연구했다.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진실 △공안통치의 맥구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상한 나라의 검찰 △정의의 여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물구나무선 형사사법개혁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사를 사법관인 판사와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감독하는 ‘사법통제’하에 두고 있다.”며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준사법기관’ 역할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사법통제 장치마저 모조리 폐지해 버린 것이 문제”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적 프레임입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지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논리와 기관논리에 따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여졌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돼야 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이 무너지고 경찰국가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5년간 경찰권력을 유신시대나 5공 시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엄청난 역사적 과오’라며 “범죄는 첨단화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얼마나 가지느냐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온 힘을 다 소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의 잇따른 인사권, 수사지휘권 남발 등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국가의 큰 인프라이고, 헌법과 현행법이 수사권을 경찰이나 검찰의 권한이 아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명시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은 수사가 사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인데, 법체계의 효율성은 45위입니다. 정부가 구심점이 되어 사법시스템의 효율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 2. 검찰개혁 빌미로 경찰권력 강화는 역사적 과오

그는 이상적인 법무·검찰 비전으로 △효과적인 사법 △인간적인 사법 △현대화된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을 순서대로 제시했다. 그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프랑스 법무부의 정책 비전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의 중요 과제로는 “사법과 국민이 서로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대검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개선안과 청사진을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 틀을 다시 짜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비용·고효율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검 조직은 슬림화하고 정책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하되 민사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가 되는 데 벽돌 한 장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20여년전 검사가 됐습니다. 형사사법을 일류화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출처/법률신문)